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66464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연희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 2. 29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1. 13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갈상민	406호 전부	등기사항 전부증명서	주거 전세권자	2024. 1. 14. ~	150,000,000					
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2. 1. 6.			
	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2. 1. 14. ~ 2024. 1. 14.	150,000,000		2022. 1. 6.	2022. 1. 6.	2024. 10. 11.	
<p><비고></p> <p>갈상민 : 경매신청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임차인 및 전세권자로서 전세권등기일은 2022. 3. 16.이며 경매신청일인 2024. 10. 11.에 배당요구하였으며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 및 전세권자로서 잔존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번호 9번 전세권등기(다만, 갈상민의 말소동의 확인서가 제출됨)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p>통칭 '동산아파트' 임.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장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66464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-347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107번길 35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시멘트

기와지붕 5층 아파트

1층 418.55m²

2층 418.55m²

3층 418.55m²

4층 418.55m²

5층 418.55m²

지하실 408.15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06호

철근콘크리트조

59.95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-347

대 1601m²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,669분의 41.66

감정평가액

160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3.18

160,000,000

16,000,000

2회

2026.04.17

112,000,000

11,200,000

3회

2026.05.21

78,400,000

7,840,000

4회

2026.06.26

54,880,000

5,488,000

통칭 '동산아파트' 임.